농지연금(융자)

세부사업명	농지연금(융자)					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농지연금(융자)				예 (백민		170 070 1		
사업목적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기능 유지 								
사업 주요내용	○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사업 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지원한도	○ 3백만원/월								
재원구성 (%)	국고	- 지방!	-	융지	ł 100	자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001014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u>구</u> 분 합계			2017년 67,305			2019년 129,929		
	기타민전	,			100,298		129,929		
	융자금	32,100	52,166 67,30		100,230		129,329		
담당기관		E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과		최문환 김은미		044-201-1742 044-201-1734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지연금사업

"빠른 고령화 시대, 안정된 노후생활을 찾으십니까?"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모두가 평생 보장 받는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시작해 보세요!

1 신청대상자

▶ 연 령 :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 영농경력 :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②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③ 지원조건

- ▶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
 - 농지가격: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단, 공시지가 100%, 감정평가 가격 90% 인정
- ▶ 부부의 경우에는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

④ 연금수령방식

- ▶ 종신형 : 정액형,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일시인출형
- ▶ 기간형(5년, 10년, 15년) : 정액형, 경영이양형

수 농지연금 장점

- ▶ 평생보장 : 부부 모두 평생 보장 (배우자 60세 이상인 경우, 승계여부 선택 가능)
-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
- ▶ 재산세 감면 : 농지연금 가입 농지가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 초과 농지는 6억까지 감면